

**2019학년도 제3차**  
**<제341차 이사회 회의록>**

2019. 8. 22.

**학교법인 대우학원**

# 학교법인 대우학원

## 2019학년도 제3차

### 〈제341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12 인	2 인
재적임원	12 인	2 인
참석임원	12 인	2 인

1. 일 시 : 2019. 8. 22(목) 07:30 ~ 10:50 (회의소집 통보일 : 2019년 8월 14일)

2. 장 소 :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카멜리아룸(2층)

### 3. 임원 출·결 사항

#### ◎ 참석임원

- 이 사 : 추호석, 김성진, 윤성복, 문길주, 신희택, 김 성, 박상일, 신상협, 이영현  
최 흥, 박형주, 김선용 (12인)
- 감 사 : 문휘창, 윤경식 (2인)

### 4. 교·직원 출석사항

- 아주대학교 : 의무부총장 유희석, 교무처장 권용진, 기획처장 최정주, 총무처장 권순정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예산팀장 윤혜정, 의료원 기획팀장 김의섭(7인)
- 아주자동차대학 : 총장 박병완 (1인)
- 법인사무처 : 사무처장 박재호, 신창규(2인)

### 5. 개회선언

이 사 장 : 재적이사 열두 분의 이사님이 참석하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6. 보고사항

이 사 장 : 회순에 따라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정주 기획처장, 박병완 아주자동차대학 총장이 각 기관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회순에 따라 안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 사

박상일

이 사

이영현

## 7. 심의안건

상임이사 이영현 : 제341차 이사회 심의안건은 학법대우 기획팀-182호(2019. 8.14)로 통보한 내용과 같이 의안 제1호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2호 의료원 직원 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3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안 제4호 2020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의안 제5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6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의안 제7호 의료원 양적규모 확대 관련 건물 등 증·신축 면적 및 소요예산 변경 승인(안), 의안 제8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9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의안 제10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의안 제11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의안 제12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의안 제13호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승인(안), 의안 제14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의안 제15호 아주대학교 보직 교원 임명 동의(안), 의안 제16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의안 제17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4차) 승인(안), 의안 제18호 2019학년도 법인(요양병원) 원화리스 7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의안 제19호 2019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의 19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 8. 심의내용

제 1 호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제 2 호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제 3 호 아주자동차대학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발의.<일괄심의>

총무처장 권순정 : 2019년 7월 16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으로,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였고,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면직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민법을 준용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 2 -

이영현

이사

이영현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징계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포함하였습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안), 아주자동차대학 직원인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아주대학교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7조(징계사유)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li> <li>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 하게 한 때</li> <li>3.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li> <li>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li> <li>5.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li> <li>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제57조(징계사유)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지 6. &lt;현행과 같음&gt;</li> <li>7. 직장 내 폭력(성폭력, 괴롭힘 등) 행위를 한 때</li> </ol>
	<p><u>부 칙</u>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병완

이사

이영현

☐ 의료원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 4 조(직원의 구분) ① &lt;삭제 2017.2.9.&gt;                      ② 직원의 직군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I, 기능직 II로 구분한다.                      ③ 직원의 직군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 4 조(직원의 구분) ① 내지 ② &lt;현행과 같음&gt;                      ③ 직원의 직군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 21 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                      10.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11.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형제·자매로서 동일 부서에 근무할 경우                      12. 기타 제 규정에 저촉되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p>	<p>제 21 조(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내지 12. &lt;현행과 같음&gt;</p>
<p>제 47 조(면직예고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의 근속자</u>                      2. <u>월급자로서 6개월 미만의 근속자</u>                      3. <u>임용기간이 2개월 이내로 정하여 고용된 자</u></p>	<p>제 47 조(면직예고 적용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 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u>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u>                      2. <u>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u>                      3. <u>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p>

<간서명란>

이사장

추노석

이사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4. <u>6개월 이내의 계절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자</u></p> <p>5. <u>수습중인 자</u></p> <p>6. <u>정년퇴직 자</u></p> <p>7. <u>계약기간이 정해진 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u></p>	<p>4. <u>계약기간이 정해진 자로서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경우</u></p> <p style="text-align: right;">&lt; 삭제 &gt;</p> <p style="text-align: right;">&lt; 삭제 &gt;</p> <p style="text-align: right;">&lt; 삭제 &gt;</p>
<p>제 55 조(징계)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 직원징계 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li> <li>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li> <li>3.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li> <li>4.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의료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li> <li>5. 대내,외에서 의료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li> <li>6.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의료원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li> <li>7. 경력사항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을 때</li> <li>8. 업무상 정당한 상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li> <li>9. 정당한 이유 없이 <u>3일</u>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제 55 조(징계)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원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원 직원징계 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내지 8. &lt;현행과 같음&gt;</li> <li>9. 정당한 이유 없이 <u>5일</u> 이상 무단결근 하였을 때</li> <li>10. <u>직장 내 폭력(성폭력, 괴롭힘 등) 행위를 한 때</u></li> </ol>
<p>제 57 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li> </ol>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li> <li>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li> </ol>	<p>제 57 조(직위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현행과 같음&gt;</li> <li>2. <u>직장 내 폭력(성폭력, 괴롭힘 등) 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u></li> <li>3.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li> <li>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li> </ol>

< 간서명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월일정액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월일정액의 5할을 지급한다.</p> <p>④ 제1항 제1호 &lt;삽입&gt;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직원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다.</p>	<p>② &lt;현행과 같음&gt;</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 &lt;현행과 같음&gt;</p>
<p><b>부 칙</b>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p>	

(별표1) 직군별 직급, 직위 분류표

현행		개정	
직급,직위 직군	직종	직급,직위 직군	직종
기술직	의료기술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방사선, 임상병리(생리학적 검사 포함), 치위생, 치기공, 영양, 의무기록, 의용공학, 사회사업, 보조기, 실험, 검사실 기사 등	기술직	의료기술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방사선, 임상병리(생리학적 검사 포함), 치위생, 치기공, 영양, <u>보건의료정보관리</u> , 의용공학, 사회사업, 보조기, 실험, 검사실 기사 등

▣ 아주자동차대학 직원인사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57조(징계사유)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p> <p>1. 법령,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본</p>	<p>제57조(징계사유) 정관 제85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p> <p>1. 내지 6. (현행과 동일)</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한 때 3. 고의 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때 4. 직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여 학교발전에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상 무단 결근한 때 6.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u>&lt;신설&gt;</u>	7. 직장내 폭력(성폭력·괴롭힘 등) 행위를 한 때
	<u>부칙</u>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4 호 2020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2020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 발의.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작년부터 내년 2월까지 의원면직 및 정년의 사유로 총 5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에, 2020학년도에 1명을 충원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54%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문 길 주 :** 이번에 한 명만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주자동차대학총장 박병완 :**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 신입생 충원을 추이를 살펴본 후, 충원율이 괜찮을 경우 연말에 추가로 승인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이 사 문 길 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20학년도 아주자동차대학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사 이영현



제 5 호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임상치의학대학원 내 임상구강보건학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치위생사 및 치과임상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임상치의학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의료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1조(학과 및 각 교실) ① 의과대학에는 의학과를, 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 ② 의학과에는 해부학교실, 생리학교실, 생화학교실, 약리학교실, 병리학교실, 미생물학교실, 예방의학교실, 인문사회의학교실, 법의학교실, 의료정보학과, 뇌과학과, 소화기내과학교실, 순환기내과학교실, 호흡기내과학교실, 내분비대사내과학교실, 신장내과학교실, 종양혈액내과학교실, 감염내과학교실, 알레르기내과학교실, 류마티스내과학교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신경과학교실, 정신건강의학교실, 피부과학교실, 외과학교실, 흉부외과학교실, 정형외과학교실, 신경외과학교실, 성형외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안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비뇨의학교실, 재활의학교실, 마취통증의학교실, 영상의학교실, 방사선종양학교실, 핵의학과학교실, 진단검사의	제11조(학과 및 각 교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p>학교실, 응급의학과교실, 직업환경의학교실, 가정의학과교실, 치과학교실, 의학유전학과를 둔다.</p> <p>③ &lt;삭제 2012. 5. 22&gt;</p> <p>④ 보건대학원에는 보건학과를 둔다.</p> <p>⑤ 임상치의학대학원에는 임상치의학과 &lt;삽입&gt;를 둔다.</p> <p>⑥ 각 학과에는 학과장, 부학과장을, 각 교실(과)에는 주임교수 및 과장을 둔다.</p> <p>⑦ 각 교실(과)의 주임교수(과장)는 해당 교실(과) 또는 관련 교실(과)의 주임교수(과장)와 부속병원의 해당과 또는 관련과의 임상과장을 겸직할 수 있다.</p>	<p>③ &lt;현행과 같음&gt;</p> <p>④ &lt;현행과 같음&gt;</p> <p>⑤ 임상치의학대학원에는 임상치의학과와 <u>임상구강보건학과</u>를 둔다.</p> <p>⑥ &lt;현행과 같음&gt;</p> <p>⑦ &lt;현행과 같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칙</u></p> <p style="text-align: center;"><u>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u></p>

### 제 6 호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노후 및 수리가 불가하여 불용 판정된 건물 부속장비, 의료기기, 의료비품, 일반비품, 전산장비 및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 총 1,607점, 취득금액 3,079,209,380원의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품목별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의 불용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최 홍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진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고정자산 불용처분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제 7 호 의료원 양적규모 확대 관련 건물 등 증·신축 면적 및 소요예산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의료원 양적규모 확대 관련 건물 등 증·신축 면적 및 소요예산 변경 승인(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먼저, 본관 증축 면적 및 소요예산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투석실, 수술실, 심도자실 등 단독 공조가 필요한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공조실 등의 건축면적이 확대되어 당초 승인받은 면적대비 151평이 증가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건축면적 증가, GMP, UPS, 환기탑 등의 필요설비 증가 및 물가상승분 등의 사유로 건축비 5,770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법 강화에 따른 내진보강의 이유로 2,000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7,770백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사업과 연계한 운항통제실 증축 계획은 항공설비실, 운항통제실, 의료인력 대기공간 등에 수전, 냉난방 등의 필수 시설이 추가되고 평당 건축비가 증가되어 390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제3주차타워 신축 계획은 주차대수가 당초 292대에서 400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면적이 383평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대토목 공사,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공법 변경, 자재 및 인건비 단가 상승과 장애인 환자 편의를 위한 E/V설치 및 캐노피 추가 설치 등의 사유로 소요예산은 당초 승인받은 금액 대비 4,000백만원이 늘어난 8,500백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의료원 양적규모 확대 관련 건물 등 증·신축 면적 및 소요예산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8 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학년도 결산에 의거한 전기이월자금의 예산편성, 전년도 승인 미집행분에 대한 이월 예산편성,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지출예산 반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사업,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진료정보교류사업 등 신규로 선정된 국고수입 및 지출 증가분 반영, 이식병동 리뉴얼공사, 의료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속병원의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889백만원 증가한 707,99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이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윤 경 식 : 일평균 입원단가가 11천원 증가하여 의료수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면 1차 추경의 의료수익 목표인 6,042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인건비 예산에 2019학년도 임단협 결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예비비 53억 중에 상당액이 인건비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의료수익 대비 의료이익률 5% 달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9학년도 원만한 임·단협을 통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윤 성 복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부속병원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 입	의 료 수 입	604,200	600,000	4,200
	의 료 외 수 입	34,873	33,083	1,790
	차 입 금	8,638	8,000	638
	기 타 수 입	20,570	20,570	-
	전 기 이 월 자 금	39,710	34,449	5,261
	계	707,991	696,102	11,889
지 출	의 료 지 출	515,742	512,745	2,998
	의 료 외 지 출	28,449	27,789	660
	고 정 자 산 지 출	47,835	43,090	4,745
	차 입 금 상 환	10,835	10,835	-
	전 출 금	54,993	54,894	99
	기 타 지 출	5,901	6,590	-689
	차 기 이 월 자 금	44,236	40,159	4,076
	계	707,991	696,102	11,889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근

이사

이영현

## 제 9 호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이 사 장 :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법인 수익사업체인 요양병원이 개원될 예정으로 수익사업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익사업의 종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자 하며, 종류는 보건업, 명칭은 '아주대학교 요양병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소는 8월 12일자로 최종 고시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고자 하며,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민법을 준용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이어서 정원 조정(안)에 대해 의료원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2018학년도 3월 정원이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병동간호관리료 1등급, 주40시간 근로시간 준수 등의 사유로 잔여 정원은 기술직 31명을 포함하여 총 141명입니다. 이후, 병원 본관 증축, 병상 증설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정 등에 따른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정원 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현 정원 총 3,079명에서 414명을 늘려 3,493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직군별·직급별 정원 조정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김 성 진 : 의료원 내부에 정원 조정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지 궁금하고, 있다면 이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정형화된 지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기획팀에서 관련 지표에 의해 정원 조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비율이 4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 김 성 : 말씀하신 인건비 비율 유지를 전제로 하여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2024년까지 약 5년에 걸쳐 계획대로 인력이 늘어난다면 의료수익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최 홍 : 지난 몇 년간 병원의 성장이 두드러졌는데, 병원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거와 동일한 성장속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는 등 경쟁요소도 격화될 수 있어 비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내년 요양병원이 개원하면 의료원과의 진료협력으로 의료원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대우학원 정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대우학원 정관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9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동산업</li> <li>2. 의료기기, 의료용품 사업</li> <li>3. 정보처리 및 정보서비스업</li> <li>4. 장례식장업</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5. 각 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p>	<p>제39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p> <p>1호 내지 4호 (현행과 같음)</p> <p>5. 보전업</p> <p>6. (현행과 같음)</p>
<p>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 온천동 상가</li> <li>2. (삭제 2013.6.27)</li> <li>3. 군산 빌딩</li> <li>4. (삭제 2018.5.24)</li> <li>5. (삭제 2012.7.9)</li> <li>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li> <li>7. 원천빌딩</li> <li>8. (주)대아</li> <li>9. (주)대아정보시스템</li> <li>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신 설&gt;</b></p>	<p>제40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9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한다.</p> <p>1호 내지 10호 (현행과 같음)</p> <p>11. 아주대학교 요양병원</p>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 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어드대로 215 (온천동)</li> <li>2. (삭제 2013.6.27)</li> <li>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 (중앙로 3가)</li> <li>4. (삭제 2018.5.24)</li> <li>5. (삭제 2012.7.9)</li> <li>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원천동)</li> <li>7. 원천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li> <li>8. (주) 대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2호, 303호 (원천동)</li> <li>9. (주)대아정보시스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li> </ol>	<p>제41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수익사업의 총괄 사무소는 이 법인의 사무소 내에 두며, 제40조의 사업장의 주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산 온천동상가 :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어드대로 215(온천동)</li> <li>2. (삭제 2013.6.27)</li> <li>3. 군산빌딩 : 전북 군산시 중앙로 83(중앙로3가)</li> <li>4. (삭제 2018.5.24)</li> <li>5. (삭제 2012.7.9)</li> <li>6. 원천동 주상복합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원천동)</li> <li>7. 원천빌딩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3번길 52-3(원천동)</li> <li>8. (주) 대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85, 302호, 303호(원천동)</li> <li>9. (주)대아정보시스템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li> </ol>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박영국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p>월드컵로 193번길 52-3 (원천동)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 49번길 46 (원천동) <u>&lt;신 설&gt;</u></p>	<p>월드컵로193번길 52-3(원천동) 10.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49번길 46(원천동) <u>11.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21(원천동)</u></p>																																																		
<p><b>제80조 (자격) ①</b>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u></li> <li>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li>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li> <li>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li> </ol> <p>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직원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p> <p>③ 재직 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p>	<p><b>제80조 (자격) ①</b>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직원(일반직, 기술직, 기능직, 별정직 등을 포함한다)으로 임용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li> <li>2호 내지 7호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u>별표</u>와 같다.</p>	<p>제96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u>별표</u>와 같다.</p>																																																		
<p>&lt;별 표&gt;</p> <table border="1" data-bbox="161 1794 794 2056"> <thead> <tr> <th colspan="2"></th> <th colspan="2">직원 정원</th> </tr> <tr> <th colspan="2"></th> <th>기관</th> <th>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직군</td> <td>직급</td> <td></td> <td></td> </tr> <tr> <td>총 계</td> <td></td> <td>3,079명</td> </tr> <tr> <td rowspan="3">일반직</td> <td>소계</td> <td></td> <td>205명</td> </tr> <tr> <td>2급</td> <td></td> <td>1명</td> </tr> <tr> <td>3급</td> <td></td> <td>4명</td> </tr> </tbody> </table>			직원 정원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3,079명	일반직	소계		205명	2급		1명	3급		4명	<p>&lt;별 표&gt;</p> <table border="1" data-bbox="815 1794 1453 2056"> <thead> <tr> <th colspan="2"></th> <th colspan="2">직원 정원</th> </tr> <tr> <th colspan="2"></th> <th>기관</th> <th>의료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직군</td> <td>직급</td> <td></td> <td></td> </tr> <tr> <td>총 계</td> <td></td> <td>3,493명</td> </tr> <tr> <td rowspan="3">일반직</td> <td>소계</td> <td></td> <td>210명</td> </tr> <tr> <td>2급</td> <td></td> <td>1명</td> </tr> <tr> <td>3급</td> <td></td> <td>4명</td> </tr> </tbody> </table>			직원 정원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3,493명	일반직	소계		210명	2급		1명	3급		4명
		직원 정원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3,079명																																																
일반직	소계		205명																																																
	2급		1명																																																
	3급		4명																																																
		직원 정원																																																	
		기관	의료원																																																
직군	직급																																																		
	총 계		3,493명																																																
일반직	소계		210명																																																
	2급		1명																																																
	3급		4명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 행			개 정		
	4급	20명		4급	20명
	5급	30명		5급	30명
	6급	94명		6급	89명
	7급	45명		7급	38명
	8급	11명		8급	28명
	소계	2,292명		소계	2,710명
기술직	2급	1명	기술직	2급	1명
	3급	3명		3급	3명
	4급	27명		4급	27명
	5급	147명		5급	190명
	6급	624명		6급	711명
	7급	979명		7급	1,187명
	8급	511명		8급	591명
	소계	30명		소계	42명
기능직 I	6등급	20명	기능직 I	6등급	35명
	7등급	6명		7등급	4명
	8등급	4명		8등급	3명
	9등급	-		9등급	-
	소계	102명		소계	90명
기능직 II	7등급	102명	기능직 II	7등급	90명
	8등급	-		8등급	-
	9등급	-		9등급	-
	소계	450명		소계	441명
별정직	2급	-	별정직	2급	-
	3급	-		3급	-
	4급	-		4급	-
	5급	130명		5급	130명
	6급	320명		6급	311명
	7급	-		7급	-
	8급	-		8급	-
				<b>부 칙</b>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0 호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 발의.

교무처장 권용진 : 본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명, 특별임용교원 석좌교수 1명으로 총 2명입니다. 석좌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 교수이며, 사회 저명인사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위상 강화와 홍보효과 및 학생들의 교육 지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재임용 대상자는 대우교수 2명, 대우부교수 2명이며 이 중 다산학부대학 이진희 대우조교수는 정책연구 등 학교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직급을 변경하여 대우부교수로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재임용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승진임용 대상자는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이 8명이며, 특별승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은 6명으로 총 14명입니다. 연구실적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준성** : 의료원 신규임용 대상자는 정년트랙 전임교원 1명입니다. 다음으로 승진임용 대상자는 총 6명으로 부교수에서 교수 승진 4명, 조교수에서 부교수 승진 2명이 되겠습니다. 신규·승진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과 이력내용 등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상 협**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재임용·승진임용 심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 아주대학교 교원 임용 동의 내용

### 가. 신규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이슬	부교수	2019.9.1.~2023.8.31.(4년)
	법학전문대학원	김영란	석좌교수	2019.9.1.~2020.8.31.(1년)
의료원	의학과(호흡기내과학교실)	고원중	교수	2019.9.1.~ 정년

- 이상 본교 2명, 의료원 1명 -

### 나. 재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국방디지털융합학과	구자열	대우교수	2019.9.1.~2020.2.29.(6개월)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김수동	대우교수	2019.9.1.~2022.8.31.(3년)
	다산학부대학	정재영	대우부교수	2019.9.1.~2020.2.29.(6개월)
	다산학부대학	이진희	대우부교수	2019.9.1~2022.8.31(3년)

- 이상 본교 4명 -

### 다. 승진임용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본교	신소재공학과	서형탁	교수	2019.9.1~ 정년
	산업공학과	이성주	교수	2019.9.1~ 정년
	교통시스템공학과	윤일수	교수	2019.9.1~ 정년
	전자공학과	김영진	교수	2019.9.1~ 정년
	국어국문학과	곽명숙	교수	2019.9.1~ 정년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소 속		성 명	임용직급	임용기간
	국어국문학과	조하연	교수	2019.9.1~ 정년
	사학과	이상국	교수	2019.9.1~ 정년
	경영학과	조재운	교수	2019.9.1~ 정년
	화학공학과	심태섭	부교수	2019.9.1.~2025.8.31.(6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은하	부교수	2019.9.1.~2025.8.31.(6년)
	응용화학생명공학과	김종현	부교수	2019.9.1.~2025.8.31.(6년)
	수학과	권순선	부교수	2019.9.1.~2025.8.31.(6년)
	경영학과	백연정	부교수	2019.9.1.~2025.8.31.(6년)
	금융공학과	장지원	부교수	2019.9.1.~2025.8.31.(6년)
의 료 원	의학과(소화기내과학교실)	유병무	교수	2019.9.1.~ 정년
	의학과(소화기내과학교실)	신성재	교수	2019.9.1.~ 정년
	의학과(이비인후과학교실)	박헌이	교수	2019.9.1.~ 정년
	의학과(가정의학과교실)	주남석	교수	2019.9.1.~ 정년
	의학과(소화기내과학교실)	임선교	부교수	2019.9.1.~2025.8.31.(6년)
	의학과(순환기내과학교실)	박진선	부교수	2019.9.1.~2025.8.31.(6년)

- 이상 본교 14명, 의료원 6명 -

### 제 11 호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 사 장 :**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 발의.  
**교무처장 권용진 :** 회의 자료의 변경 사항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계획의 신규배정 TO는 2019학년도 TO에 대한 미충원 증가분 6명과 2019년 8월 말 중도 퇴직으로 인한 4명을 반영하여 총 10명이 증가한 3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정년트랙의 경우 당초 5명에서 중도퇴직으로 인한 2명을 반영하여 총 7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외부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교 적정 전임교원 확보율은 72%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0년 4월 기준으로 계획 대비 80% 총원 시 확보율은 72.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신 희 택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20학년도 아주대학교 교원 신규임용 채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제 12 호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등록금, 국고수입, 전입금 및 기금인출 등 수입예산 변동에 따른 지출 예산을 반영하고, 2018학년도 결산 확정 에 따른 이월금 지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6억원이 증가한 2,7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최정주 기획처장이 추경 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사 윤경식 : 기숙사 신축계획은 2018년 8월 이사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19년 본 예산 수립 시 세부 추진사항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소요예산 총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 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의 근본 취지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소요예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는 예산이므로, 기숙사 건축의 세부 추진사항이 최종 확정되 지 않았더라도 이사회에서 확정된 것이므로 승인된 일정 계획에 따라 2019년 도에 집행할 예산 한도를 추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본예산 수립 시 보다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과 관련 학생수 증가 에 따라 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수업료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참고로 2019학년도 임금인상율이 확정되 지 않은 상태이며, 추후 임단협 결과에 따른 급여인상분은 2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 사 장 : 이 외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윤성복 :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경예산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상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최정주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2019학년도 아주대학교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단위 : 억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 감
수입	등록금및수강료수입	1,286	1,278	8
	전입및기부금수입	1,032	977	55
	교육부대수입	150	148	2
	교육외수입	35	35	0
	투자및기타자산수입	129	91	38
	고정부채수입	2	2	0
	미사용전기이월자금	88	45	43
	계	2,722	2,576	146
지출	보수	1,286	1,271	15
	관리운영비	277	255	22
	연구학생경비	853	814	39
	교육외비용	11	11	0
	자산취득	152	91	61
	투자및기타자산지출	90	81	9
	고정부채지출	14	14	0
	예비비	2	2	0
	미사용차기이월자금	37	37	0
	계	2,722	2,576	146

제 13 호 타쉬켄트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승인(안)

이 사 장 : 타쉬켄트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승인(안) 받의.

기획처장 최정주 : 아주대학교 교육과정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여 중앙아시아에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 모델을 전수하고 이를 통해서 대학의 국제화, 교육 및 연구교류를 강화하고자 하며, 유학생을 확보하여 대학원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타쉬켄트 아주대학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본교 간의 MOU 체결 이후에 신설되는 대학으로 2020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개 학과, 입학정원 420명으로 편제정원은 총 1,680명이 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학설립, 시설관리 및 재정 투자의 역할을 맡고, 아주대학교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 교육과 학과 운영을 맡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출구전략과 관련해서 교비 투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개 학과 운영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지 학사운영이 아닌 일반 운영관리를 위한 직원은 누가 채용하는지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까지 계약서에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교원을 파견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대학이 책임져야할 인력 중 몇 명의 교직원을 파견해야 하는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운영에 필요한 모든 교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사 이영현

직원을 우리 대학이 부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AUT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들을 선임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충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쟁해결 방법 및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협약 내용들이 규정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만 출구전략이 실행되더라도 우리 인력을 복귀시키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 학교의 기본 정책을 분명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윤과 관계없이 교육과정을 수출하여 훌륭한 학생을 배출하고 자연스럽게 유학생을 끌어들이는 방법 등 다른 실리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책이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파견되는 인력을 포함한 교직원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용은 현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견 규모는 학과별로 최소 전임교원 1명이 필요해 보이며, 직원 2명도 현지 직원의 전문성이 갖추어지는 얼마 동안은 파견하되, 그 이후로는 1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만들어질 추진단에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사 박 상 일 :** 말씀하신 내용들이 계약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파견되는 교원의 인건비를 AUT가 전액 부담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지에서 채용되는 교원과 인건비 수준에 차이가 있을 텐데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라든지 항공료, 주거비 및 체재비 등 지원에 관한 상세한 내용까지도 최대한 협의가 되어 있어야 운영과정에서 서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 문 휘 창 :** 전략적인 차원으로 아주대학교로 유학을 오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이들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면 사업 운영에 있어 융통성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겨서 출구전략이 실행되더라도 협상의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실제로 현지에서 운영 차액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하여 재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령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본교 대학원에서 유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현지 국비장학금 제도의 수혜를 받는 국비유학생을 요구하여 이들을 유치한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자국의 장학금을 등록금수입으로 끌어올 수 있고 우리 대학은 장학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유치 관련하여 대학 평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박 상 일 :** 대학의 특성상 이윤 추구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주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매년 계약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장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신 상 협 : 대학 사정에 따라 비전임교원을 파견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성패는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 현지 대학과는 확실히 차별화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교원을 대거 파견하여 아주대학교가 쌓아온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총장) 박형주 :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적어도 한과에 전임교원 1명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또한, 명예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 신 상 협 : 현지에서 충원된 교수요원이 본교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끌어들이면 우리 대학이 가진 노하우를 전수하는 동시에 교육의 질을 간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 현지의 장학금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 장 : 사업 진행 중 중요한 사안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신 상 협 : 원(안)에 재청합니다.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제 14 호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 발의.

기획처장 최정주 : 타슈켄트 아주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AUT사업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편제, 주요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 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5조 (기구) ① 본 대학교는 총장, 교무부총장, 의무부총장, 산학부총장, 대학, 대학원, 특수학부, 대학교본부, 부속기관, 연구기관, 지원기관,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의료원, 총장직속기구 및 부총장직속기구를 둔다.</p> <p>② 대학에는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 약학대학과 다산학부대학을 두며, 대학 소속이 없는 특수학부로 국제학부를 둔다.</p> <p>③ 대학원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대학원 : 대학원</li> <li>2. 전문대학원 :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li> <li>3. 특수대학원 : 공학대학원, 경영대학원, 공공정책대학원, 교육대학원, 국제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교통·ITS대학원,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IT융합대학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li> </ol> <p>④ 대학교본부에는 교무처, 연구정보처, 학생처, 총무처, 기획처, 입학처 및 국제협력처를 둔다.</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li> <li>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lt;삭 제&gt;</li> </ol>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⑥ 연구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 지원기관은 대학, 대학원, 대학교본부, 부속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과대학 : 공학교육혁신센터</li> <li>2. 다산학부대학 : 의사소통센터, 소프트웨</li> </ol>	<p>제5조 (기구) 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p> <p>⑤ 부속기관에 설치하는 기구와 그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무처장 : 평생교육원, 대학교육혁신원</li> <li>2. 연구정보처장 : 중앙도서관, 박물관</li> <li>3. 학생처장 : 생활관, 아주심리상담센터, 대학일자리센터, 보건진료소, 대학언론사</li> <li>4. &lt;삭 제&gt;</li> <li>5. 기획처장 :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li> </ol> <p>⑥ 내지 ⑩ (현행과 같음)</p>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현행	개정
<p>어교육센터</p> <p>3. 교육대학원 : 교육대학원부설교육연수원</p> <p>4. 법학전문대학원 : 중소기업법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평가센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습지원센터</p> <p>5. 교무처 : 교직부, 과학영재교육원</p> <p>6. 연구정보처 : 공동기기센터</p> <p>7. 학생처 : 사회봉사센터, 학생군사교육단, 종합지원센터</p> <p>8. 총무처 : 예비군연대</p> <p>9. 입학처 : 입학사정센터</p> <p>10. 국제협력처 : 불어권협력센터, 국제교육센터</p> <p>11. 중앙도서관 : 출판부</p> <p>12. 대학교육혁신원 :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평가인증센터, 다산융복합교육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p> <p>13. &lt;삭 제&gt;</p> <p>14. 대학언론사 : 학보사, 교육방송국, 영자신문사</p> <p>⑧ 총장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실, 비서실,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 창업지원단 및 인권센터를 둔다.</p> <p>⑨ &lt;삭 제&gt;</p> <p>⑩ 교육·연구 진흥과 학교 발전에 필요한 특수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항 내지 제8항의 기구 외에 특별기구를 학칙에 둘 수 있다.</p>	
<p><b>제10조 (부속기관)</b> ① 부속기관에 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3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li> <li>2. &lt;삭 제&gt;</li> <li>3. 평생교육원 : 교학팀</li> <li>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li> </ol>	<p><b>제10조 (부속기관)</b> ① (현행과 같음)</p> <p>② 다음 각 호의 부속기관에는 팀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도서관 : 학술정보팀</li> <li>2. &lt;삭 제&gt;</li> <li>3. 평생교육원 : 교학팀</li> <li>4. 대학교육혁신원 : 운영팀</li> </ol>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환



현 행	개 정
5. 대학일자리센터 : 운영팀 6. <삭 제> <u>&lt;신 설&gt;</u> ③ 부속기관의 팀에 팀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보하거나 4급 이상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다만, 팀장을 두지 않는 경우 책임과장을 둘 수 있으며, 5급의 일반직원으로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④ 부속기관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5. 대학일자리센터 : 운영팀 6. <삭 제> 7. AUT(Ajou University in Tashkent) 사업단 : 운영팀 ③ 내지 ④ (현행과 같음)
	<u>부 칙</u> <b>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

### 제 15 호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 발의.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보직 중 2019.8.31.부로 임기만료 및 보직사임의 사유로 공석인 보직에 대하여 후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총장의 제청을 받아 공과대학장에 건축학과 이규인 교수, 정보통신대학장에 소프트웨어학과 류기열 교수, 인문대학장에 국어국문학과 조광국 교수, 국제대학원장에 사회학과 김병관 부교수, IT융합대학원장에 전자공학과 이채우 교수,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에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김수동 대우교수, 학생처장에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를 2019년 9월 1일부로 임명하고자 동의 요청드립니다. 임명 제청된 보직 교원의 자세한 이력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김 성 진 : 이력사항을 살펴보니 본교에 큰 도움이 되실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보직교원 임명 동의(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의 내용과 같이 임명 동의하였음을 가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아주대학교 보직 임명 동의 내용

보 직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임명요청일자	비 고
공과대학장	건축학과	교 수	이규인	2019. 9. 1부	신임
정보통신대학장	소프트웨어학과	교 수	류기열	2019. 9. 1부	연임
인문대학장	국어국문학과	교 수	조광국	2019. 9. 1부	신임
국제대학원장	사회학과	부교수	김병관	2019. 9. 1부	신임
IT융합대학원장	전자공학과	교 수	이채우	2019. 9. 1부	신임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장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대우교수	김수동	2019. 9. 1부	연임
학생처장	교통시스템공학과	교 수	유정훈	2019. 9. 1부	신임

제 16 호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이 사 장 :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 발의.

이 사 장 : 외부위원의 임기가 2019.12.14.부로 만료될 예정으로 그 후임을 선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화현 신경식 대표를 외부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사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최 홍 : 신경식 위원의 연임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성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선임(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법무법인 화현의 신경식 변호사를 2019.12.15부터 임기 3년의 아주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가결합니다.

제 17 호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4차) 승인(안)

이 사 장 :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4차) 승인(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수익용 건물 신축 대금 기채 4차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용 건물 신축 개요 및 자금 조달 계획은 전차 이사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재차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용 건물 신축 대금 기채 총 예정금액 약 471억 중에서 1차 기채 약 48억과 2차 기채 약 128억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3차 기채 약 165억도 계획대로 교육부 허가 후 5개월 이내(2019.6.17.~2019.11.16.)에 기채 실행이 완료될 것으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규인

이사

이영현

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이사회에 공사 기성에 따른 4차 기채 약 129억원 기채 승인(안)을 상정한 것이며 기채처, 이율, 기채기간, 담보물건 등은 3차 기채 시와 동일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13년 기준으로 원금 약 471억에 이자 약 170억을 상환할 예정이며 요양병원의 현금흐름을 통하여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채 효과는 수익용 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현재 73.4%에서 106.8%로 33.4%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익용 건물 신축 대금 기채 4차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석임원 자료를 보며 심의하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박 상 일 :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문 길 주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

이 사 장 : 그러면 수익용건물 신축 대금 기채(4차) 승인(안)을 심의하여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기채 승인 내용

구분	기채 승인 내용
기채 한도액	금 일백이십구억삼천삼백만원정(W 12,933,000,000원)
기채처	제1금융권(국민은행)
이율	기준금리(MOR) + 1.60%(8.5. 기준 3.01%)
기채기간	차입일로부터 13년(5년 거치 8년 상환)
담보물건	해당 없음
기채용도	수익용 건물(요양병원) 신축
상환재원	법인회계

제 18 호 2019학년도 법인(요양병원) 원화리스 7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법인(요양병원) 원화리스 7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 받의.

상임이사 이영현 : 요양병원 개원을 앞두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 전산장비 및 비품 등을 도입하고자 원화리스 75억원에 대한 한도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리스사는 롯데캐피탈주식회사로서 금리는 기준금리에 0.598%를 더한 2019년 7월 5일 기준 2.521%로 1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한 이사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사 박 상 일 :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윤 성 복 : 원(안)에 재청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원(안)에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법인(요양병원) 원화리스 75억원 한도계약 승인(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원화리스 75억원 한도계약 승인 내용

구 분	승인 내용
리스사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계약금액	75억원
리스기간	5년(6개월 거치 54개월 상환조건 선택가능)
납부방법	3개월 후불
금리	기준금리+0.598%
금리조정	1년 단위 변동금리
리스형태	금융리스
담보제공	무담보 신용
종료후자산처리	무상양도

제 19 호 2019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 승인(안)

이 사 장 : 2019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발의.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일반업무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2,305백만원이 증가한 114,74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주요 내용으로 임대료 수입 증가, 임차보증금 회수에 따른 수입 증가, 아주대학교 요양병원 신축에 따른 장기차입금수입이 있으며 전기이월자금 확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내용으로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요양병원의 사업진행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현 상임이사가 법인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이 사 장 : 이어서, 법인수익사업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이영현 : 법인수익사업회계 장례식장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은 2018학년도 전기이월자금 확정에 따라 본예산 대비 463백만원이 증가한 10,03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인수익사업 요양병원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 주요 내역은 내년 2월 개원 후 25일간의 의료수입, 의료장비 및 필수기자재 구입을 위한 원화리스 차입금 수입, 운영자금인 기본금증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 주요 내역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주요 편성내용은 회의 자료를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영현 상임이사가 법인수익사업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수입 및 지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다.)

< 간서명 란 >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감 사 윤 경 식 : 전체적으로 잘 작성이 된 예산(안)으로 생각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추경 예산안은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2020학년도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정상적인 손익 및 자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 장 : 감사님께서 검토하신 의견 외에 원(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 사 신 희 택 : 추경예산(안)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 사 김 선 용 : 원(안)에 재청합니다.

이 사 장 : 원(안)에 대하여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에 찬성하다.)

이 사 장 : 그러면 2019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가결합니다.

▣ 2019학년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 법인 일반업무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 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	증 감
수 입	전 입 금 수 입	15,651	15,651	-
	기 부 금 수 입	2,100	2,100	-
	예 금 이 자 수 입	1,134	1,134	-
	수 익 재 산 수 입	2,050	2,035	15
	잡 수 입	1	1	-
	수익용예금인출	3,233	3,233	-
	임차보증금회수	30	-	30
	장기차입금차입	39,302	35,464	3,838
	임대보증금수입	785	785	-
	전기이월자금	50,461	42,039	8,422
	계	114,747	102,442	12,305
지 출	보 수	970	1,129	-159
	관 리 운 영 비	1,441	1,276	165
	지 급 이 자	1,323	1,323	-
	법정부담전출금	8,337	8,337	-
	경 상 비 전 출	3,632	3,630	2
	예 비 비 등	200	200	-
	출 자 금 지 출	3,000	-	3,000
	부 속 병 원	20,000	20,000	-
	임의퇴직기금적립	85	85	-
	고 정 자 산 매 입	54,695	46,727	7,968
	장기차입금상환	1,094	1,094	-
	임대보증금환급	785	785	-
	차기이월자금	19,185	17,856	1,329
계	114,747	102,442	12,305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 법인 수익사업회계(장례식장)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	증감
수입	장례식장운영수입	5,113	5,113	-
	임대료수입	3,870	3,870	-
	관리비수입	17	17	-
	예금이자수입	1	1	-
	잡수입	2	2	-
	유형고정자산매각수입	1	1	-
	전기이월자금	1,034	571	463
	계	10,038	9,575	463
지출	보수	812	812	-
	관리운영비	1,467	1,467	-
	장례식장운영비	660	660	-
	예비비	50	50	-
	잡손실	2	2	-
	전출금	6,000	6,000	-
	고정부채상환	50	50	-
	고정자산매입	150	150	-
	차기이월자금	847	384	463
계	10,038	9,575	463	

▶ 법인 수익사업회계(요양병원)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구분	관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수입	의료수입	19	지출	인건비	912
	의료외수입	9		재료비	122
	기타고정부채수입	50		관리비	533
	차입금수입	7,500		의료외비용	2
	기본금증가	3,000		예비비	100
	전기이월자금	0		고정자산	7,556
	계	10,578		고정부채상환	17
		차기이월자금	1,336		
		계	10,578		

9.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 선임 의결

이 사장 : 제34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저와 이영현 이사, 박형주 이사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참석임원 전원이 찬성하다.)

이 사장 : 그러면 사립학교법 제18조의2에 의거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자로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박형주를 참석임원 호선으로 선임하였음을 의결합니다.

<간서명란>

이사장

추호석

이사

이영현

이사

이영현

10. 폐회선언

이 사 장 :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341차 이사회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10시 50분에 산회를 선포하고 위 의결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임원 전원이 회의록에 자필로 서명하다. )

2019 년 8 월 22 일

이사장	추 호 석	추 호 석
이 사	김 성 진	김 성 진
이 사	윤 성 복	윤 성 복
이 사	문 길 주	문 길 주
이 사	신 희 택	신 희 택
이 사	김 성	김 성
이 사	박 상 일	박 상 일
이 사	신 상 협	신 상 협
이 사	이 영 현	이 영 현
이 사	최 홍	최 홍
이 사	박 형 주	박 형 주
이 사	김 선 용	김 선 용
감 사	문 휘 창	문 휘 창
감 사	윤 경 식	윤 경 식